



Policy

ISSUE

2018  
정책이슈리포트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방안

REPORT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방안

## 연구진

이 소 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 제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 CONTENTS

I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04
1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발전 수요 증가	04
2	지자체 차원의 개발 한계 노정	05
3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의 의지 표명	07
II	관련법 및 제도 현황과 실태	08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08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10
3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지원 현황	12
4	경기도의 사업추진 현황	16
III	국외사례 검토	20
1	일본 오키나와	20
2	독일	23
3	필리핀	25
IV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27
1	기본방향	27
2	전담기구에 의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방안	28
3	관련법 개정	35



# I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 ①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 발전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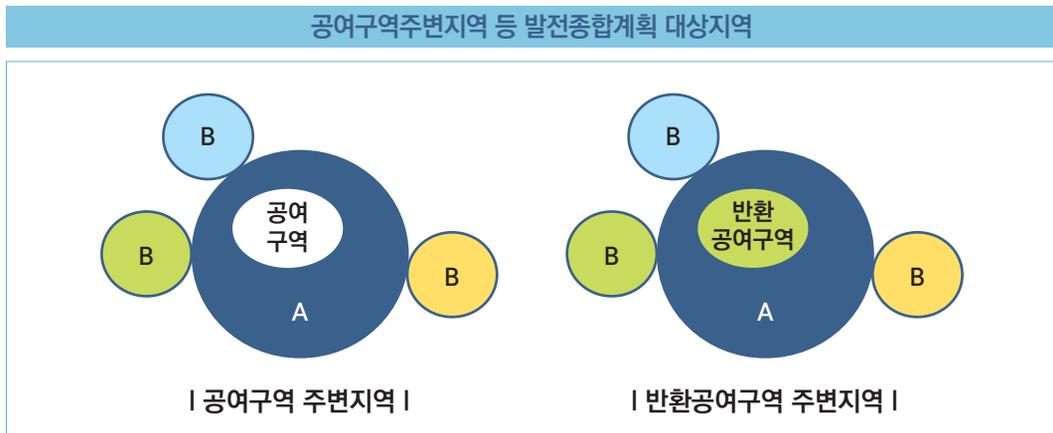
### ④ 주한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및 반환공여지역 발전 수요 증가

-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던 시군 지역은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 저해 및 경제적 발전 저해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 미군 주둔에 의한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이냐는 주민설문결과, 부정적인 이미지 제공, 경제적개발 저하,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등을 제기(경기연구원, 2018)
- 미군기지 주둔에 의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8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폐기되어 주민 불만이 팽배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하며,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23.8%에 그쳐,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낮은 실정(경기연구원, 2018)
- 지자체 자원조달 능력 부족, 열악한 민간투자 환경 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발 지원 요청 증가

## 2 지자체 차원의 개발 한계 노정

### 8 경기침체 및 민자유치 저조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추진

- 2008년 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08~'17)\*은 캠프 캐슬 교육연구시설(동양대) 이전,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로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려워 2017년 변경계획을 수립
  -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기존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여건변화 등으로 타당성이 낮게 된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으로 대체 지원 결정(행정안전부, 2017)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함(특별법 제2조)

Ⅰ <표 1> 특별법상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Ⅰ

구분	공여구역주변지역 (46개 시·군·구)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30개 시·군·구)
부산광역시	동구, 남구, 해운대구, 강서구	부산진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달성군	남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화성시, 포천시, 의왕시, 오산시, 양평군, 연천군, 가평군	성남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포천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평군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홍천군, 철원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
전라북도	군산시	-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칠곡군, 성주군 울릉군	포항시, 봉화군
경상남도	진해시, 마산시, 창원시, 양산시	사천시, 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국비 지원은 미미하여 사업 실현 가능성 불투명

- 향후 5년간 사업들도 지방비 및 민자 조달이 막대하여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
  - 향후 5년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131건, 총사업비 2조 3,504억 원(국비 6,514억 원)의 신규 사업 추진 예정
  - 계속사업들에 대해서도 토지가격 변동과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 지속 지원 예정(127건 34조 2,009억 원/ 국비 1조 5,165억 원, 지방비 2조 414억 원, 민자 등 30조 6,431억 원)

### 3 문재인 정부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의 의지 표명

#### ⑧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국정과제 5개년 지역공약과제 반영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지역공약 과제로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제시
  - 미군기지 주변지역과 같이 국가 전체의 안보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
- 지역의 잠재된 성장동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복지 증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제 5개년 지역공약과제로 반영하여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개발 의지 표명

## II 관련법 및 제도 현황과 실태

###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 🔗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미군기지 주둔에 의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표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Ⅰ

구분	주요 내용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및 제8조)	- 시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제12조)	- 국방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 협상을 해야 함 -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 국방부 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14조)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 내의 국유지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반환공여구역이 반환될 당시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법」에 의해 하천으로 편입되어야 하는 토지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
사업비 지원과 조성 (제34조)	- 국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 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체계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통해 지원
  - 발전종합계획은 시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개발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



### 발전종합계획의 구성(제7조)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개선에 관한 사항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와 법 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승인을 얻은 자가 수행
  - 사업시행자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 사업대상 및 범위(시행령 제10조)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개발사업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지역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산업단지 조성사업
-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접경지역종합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이전·증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의 조성사업
-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의 설치사업

## ②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 ⑧ 계획 현황

- 2008년 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2017년 경기 상황, 물가 상승에 의한 사업비 증가, 민자유치의 난관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변경 수립
- 발전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반환공여구역,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이며, 전국 13개 시도, 66개 시군구, 338개 읍면동이 해당

- 2017년 재수립된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반환공여구역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향 제시(행정안전부, 2017)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은 일단락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민자 의존도가 높은 사업도 지양
  -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 투자 제고 및 실행 가능성 높은 계획 위주 사업 구성

### 발전종합계획(변경안) 수립의 기본방향

01

####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은 일단락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계획은 완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도로사업은 대부분 완료

02

#### 민자 의존도 지양

민간투자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히 저조하기 때문에 민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지양

03

#### 문화·복지사업 투자 제고

현행 사업은 SOC 위주, 변경(안)은 주민수요 높고 미군 주둔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문화복지 혜택 제공

04

#### 실행 가능성 높은 계획 위주 사업구성

민간투자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히 저조하기 때문에 민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은 지양

### ⑧ 계획 변경안 현황

-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총 사업 규모는 536건, 42조 3,72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규모는 4조 1,741억 원으로 기존 계획과 변동 없는 수준에서 조정
  - 지방비는 3,294억 원, 민자 등은 1,164억 원이 줄어들어, 기존 계획에서 4,458억 원 감소
  - 신규사업 규모는 131건으로 총사업비 2조 3,504억 원 중 국비 6,514억 원(27.7%), 지방비 8,952억 원(38.1%), 민자 등 8,038억 원(34.2%) 투입
  - 시도별로는 대상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사업규모가 38건, 1조 6,856억 원(72%)으로 월등히 높지만, 국비 지원은 3,464억 원에 불과하며 지방비가 5,389억 원, 민자 유치가 총 사업비의 47.5%인 8,004억 원에 달함

Ⅰ <표 3>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시도별 신규사업 규모 Ⅰ

구분	사업 건수	사업비(억 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등
부산	3	119	60	60	-
대구	8	844	420	423	-
인천	2	162	52	110	-
광주	1	70	35	35	-
대전	11	392	196	196	-
경기	38	16,856	3,464	5,389	8,004
강원	9	424	180	244	-
충북	2	320	300	20	-
충남	11	1,358	387	947	25
전북	11	418	209	209	-
경북	25	1,662	839	823	-
경남	2	594	230	364	-
제주	6	206	103	94	9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내실화 계획)

3 발전종합계획의 사업지원 현황

토지매입비 지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반환공여지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법 제14조)
  - 다만 토지용도는 도로·공원·하천이며, 지원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공여구역 면적 비율 및 지역주민 1인당 공원·도로·하천 면적 비율에 따라 60~80%로 차등 지원됨(시행령 제14조)
  - 토지매입비 보조율은 동두천시가 80%로 가장 높고, 의정부시 69.9%, 부산·대구·인천 66.7%, 춘천 66.1%, 원주 65.5%, 파주 65.4% 순임(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⑧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 지원

-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 등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사회기반시설 지원(제24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 지원(제25조), 교육·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지원(제26조)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으로부터 필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

Ⅰ <표 4>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설 지원 규정 Ⅰ

구분	주요 내용
사회기반시설의 지원 (제24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 교육지원 (제25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병원·청소년회관 등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음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적절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 국비 지원 보조율은 지원 시설별로 상이하며, 주로 공공용으로 활용되는 문화·복지·교육시설에 국한되어 있음

## 🌀 특례 지원

- 특별법은 민자사업을 촉진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특례 및 인·허가 등의 의제도 포함하고 있음
  - 반환공여지 및 그 주변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이라도 공장의 신·증설(법 제15조)과 학교의 이전·증설(법 제17조)이 가능
  - 또한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이전해오는 사업자 등에게 조세감면(제35조)이 가능하며, 해당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법 제16조)하여 외국교육기관 설립(법 제18조)도 가능
- 반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규정은 의무조항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해놓고 개별법에 감면 범위와 비율이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힘든 구조임

Ⅰ <표 5> 반환공여구역 등 지원 특례 사항 Ⅰ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 토지를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하지 않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 가능	제13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 시설·증설 가능	제15조
외국인투자지역	-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	제16조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서 학교의 이전증설 가능	제17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특례	- 외국교육기관 설립 가능	제18조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가능	제19조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	제23조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한 소요자금의 용자알선 및 대부 가능	제27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감면 가능 -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가능 - 인허가 등 수수료 및 사용료 면제	제35조
인허가 등의 의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간주	제29조

## 8 유사법 지원 비교

-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유사한 관련법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평택시 등의)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음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의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100% 국가가 주도한 사업이며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 평택지원 특별법의 경우 국비 보조율이 80%(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경우 100%)로 현행 공여구역 특별법에 비해 국가지원금이 높은 편임
  -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은 국비 보조율이 용산 특별법과 평택지원 특별법에 비해 낮고, 사업 범위도 제한적임
- 3개 특별법이 유사한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나, 지원 규모와 범위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음

Ⅰ <표 6> 공여구역 특별법과 관련법 비교 Ⅰ

구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평택지원 특별법	공여구역 특별법
목적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및 관리하고 주변지역 체계적 정비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해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
제정일	2007년 7월 13일	2004년 12월 31일	2006년 3월 3일
국비 보조율	- 토지: 무상제공 - 공원조성비 100%	- 발전계획: 80% - 지방산단: 100%(기반시설)	- 공여구역 국유지 토지매입: 60~80%(도로, 공원, 하천) -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0%
장점	지방비 부담없음	낮은 지방비 부담 비율	-
단점	-	-	- 제한된 국비보조 - 높은 지방비 부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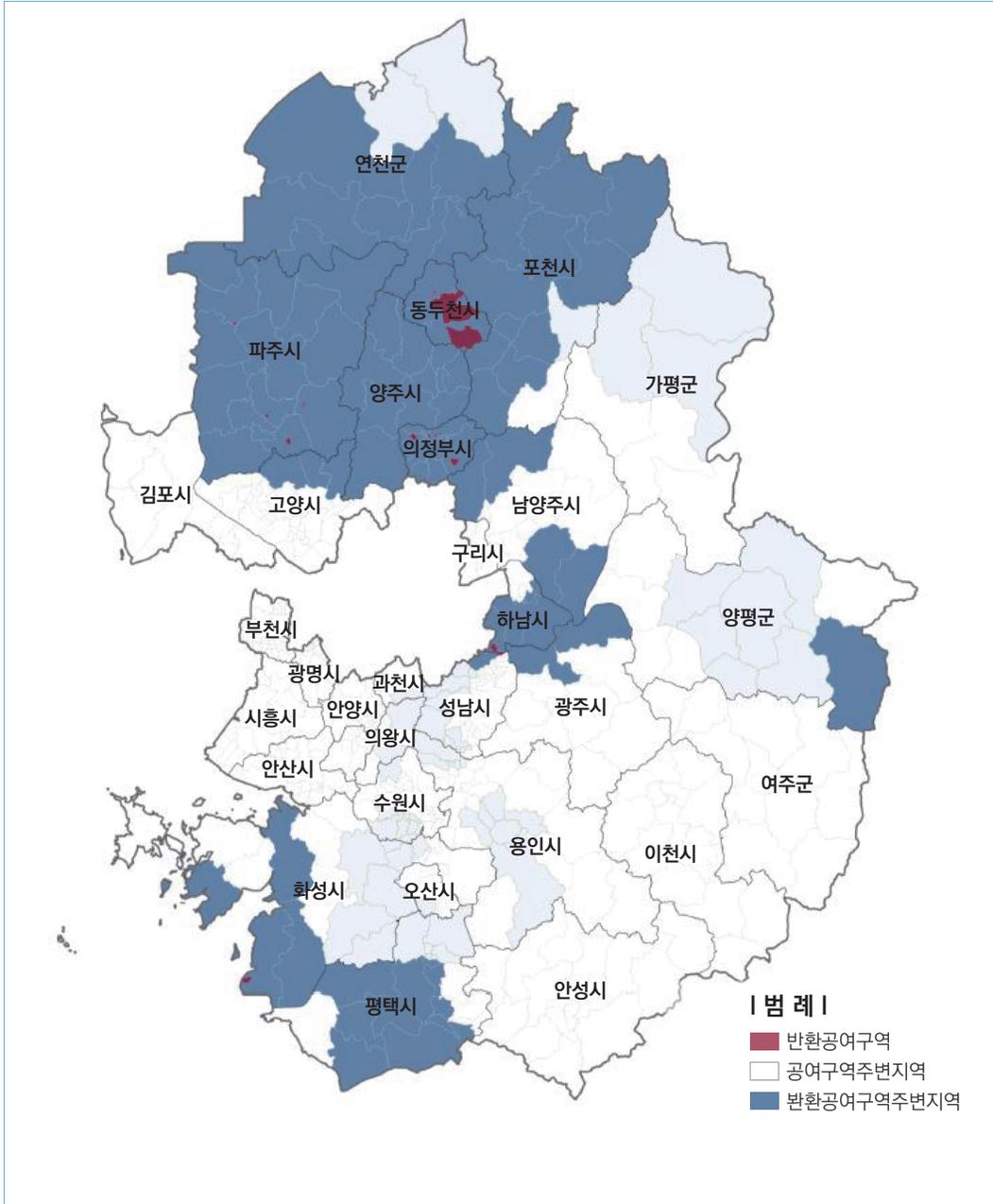
자료: 파주시(2016),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집

## 4 경기도의 사업추진 현황

### 8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 현황

- 경기도 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 210km<sup>2</sup>로 전국 93개소 242km<sup>2</sup> 면적의 87%에 해당
-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면적은 172km<sup>2</sup>로 전국 반환공여구역 면적 179km<sup>2</sup>의 96.1%로 반환 공역지 대부분이 경기도에 집중 분포되어 있음
- 경기도 공여구역은 북부에 38개소 168km<sup>2</sup>, 남부에 13개소 43km<sup>2</sup>로 주로 북부에 집중되어 있음
- 이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개소 173km<sup>2</sup>로 북부에 29개소 145km<sup>2</sup>, 남부에 5개소 28km<sup>2</sup> 소재
- 34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총 22개소로 경기 북부에 20개소, 남부에 2개소 소재
  -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살펴보면, 군 지속 사용이 5개소이며, 산악지역이 7개소임

경기도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분포현황



자료: 경기연구원(2018)

Ⅰ <표 7> 경기도 지역별 공여구역 및 활용 가능 반환공여구역 현황 Ⅰ

구분	전체 공여구역		반환대상 공여구역		반환대상 중 활용 가능지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반환완료	미반환
계	51	211km <sup>2</sup>	34	173km <sup>2</sup>	22	16	6
북부	38	168km <sup>2</sup>	29	145km <sup>2</sup>	20	14	6
남부	13	43km <sup>2</sup>	5	28km <sup>2</sup>	2	2	-

자료: 경기도(201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 현황

- 경기도의 활용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총 22개소로 의정부 8개소, 동두천 6개소, 파주 6개소, 하남 및 화성 각 1개소로 이 가운데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15개소이며, 부분적으로 반환된 기지는 2개소, 나머지 5개소는 미반환 상태
- 반환이 완료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10개소이며, 개발이 답보상태인 기지는 6개소나 됨
  -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의 특징은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하거나, 공원화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공시설을 유치한 곳임
  - 미개발지 6개소는 대부분 기지 규모가 방대하거나 접근성 미비, 고가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한 곳임
- 의정부 및 동두천시의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6개소 또한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규모가 방대하여 자치단체 재원으로는 토지매입 및 개발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Ⅰ <표 8>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 현황 Ⅰ

구분	캠프명	활용면적(km <sup>2</sup> )	활용계획	개발현황
의정부(8)	라과디아	160	도로, 공공청사, 체육공원	사업 중
	홀링워터	28	근린공원	사업 중
	에세이온	217	교육연구 및 부속병원	사업 중
	카일·시어즈	262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사업 중
	잭슨	82	예술공원	미반환
	레드클라우드	651	안보테마관광단지	미반환
	스탠리	803	엑티브시니어시티 조성, 공원	미반환
동두천(6)	케이시	5,083	평화공원, 지원도시개발, 대기업생산용지 등	미반환
	호비	768	지원도시개발(복합시니어레저타운)	미반환
	모빌	170	유통상업단지, 도로, 공원	미반환
	캐슬	287	교육연구, 주거단지	사업 중
	넘블	54	근린공원,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짐볼스 훈련장	2,426	수목원, 산림복지타운, 드라마세트장 등	담보상태
파주(6)	자이언트	111	교육연구·도시개발	담보상태
	에드워즈	220	교육연구시설, 도시개발	담보상태
	게리오웬	312	도시개발·산업단지	담보상태
	스탠턴	236	교육연구·도시개발	담보상태
	하우즈	640	근린공원, 도시개발사업	사업 중
	그리브스	118	역사공원	사업 중
하남(1)	콜번	241	교육연구시설	담보상태
화성(1)	쿠니에어레인저	995	평화생태공원	사업 중

자료: 경기도(2018), 내부자료

## Ⅲ 국외사례 검토

### ① 일본 오키나와

#### 📌 오키나와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연혁

-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전쟁 종결 후 미군이 오키나와의 토지 대부분을 점령
  - 1953년 미군은 오키나와 토지를 군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강제수용수속을 정한 '토지 수용령' 공포 및 기점수지의 사용권 취득을 위한 '군용지역 내의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포상'을 공포함으로써 일방적으로 토지 강제수용
- 1972년 미-일 오키나와 반환협정을 체결하여,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축소되어 지는 부분은 일본 자위대에 의해 보충하고, 관련 재편성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
  - 협정 이후 오키나와현에 대한 미군기지의 반환은 2003년까지 약 16%가 반환되는 것에 그쳐, 현재까지도 미군공여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 미군기지에 의해 항공기 소음 발생, 미군에 의한 치안사건 및 환경오염물질 유출 등 지역 문제가 끊임없이 유발되어 주민반발 심화
- 오키나와의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보상문제, 이용 촉진 및 국가적 책임 등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1978년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공여 구역 반환에 수반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반환특별법)' 조기 입법화를 추진
- 그 결과 '나라의 부담 또는 보조비율의 특례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법안 일부를 수정한 끝에 1994년 6월 반환특별법이 시행
  - 이후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의 제정 및 오키나와 진흥계획 결정(2002), 반환공여구역 대책 협의회 발족(2002), 반환특별법의 개정(2002) 등 일련의 대책이 추진됨

## ⑧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활용 현황

- 2015년 현재 반환공여구역 12,628.6ha 중 4,886.4ha(39%)가 공공사업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Ⅰ <표 9>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사업진행현황 (2015) Ⅰ

반환면적 (ha)	공공사업 실시현황							
	완료		실시 중		계획 중		합계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12,628.6	4,483.6	36	267.4	2	135.4	1	4,886.4	39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내실화 계획)

- 정비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에 의한 이용이 3,918.5ha(31%)이며, 보전지역이 4,011ha(31%), 공공의 이용이 2,621.8ha(21%), 자위대 이용이 488.8ha(4%) 임

Ⅰ <표 10> 오키나와 반환공여구역 정비이용현황 (2015) Ⅰ

공공 이용		개인/기업의 이용				자위대의 이용		미군의 재사용		보전지		개발불능지	
		공공사업 실시		공공사업 미실시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반환면적	%
2,621.8	21	2,008.9	16	1,909.6	15	488.8	4	320	3	4,011	31	1,278.2	10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내실화 계획)

- 반환된 토지는 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개량 사업 등의 공공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에 활용되고 있음
  - 활용 용도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부터 농지, 리조트, 호텔, 골프장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도심과 멀거나 대규모 부지인 경우 농지 및 관광단지, 보전지 등으로 활용되고 도심에 위치한 중소규모 부지의 경우 상업시설과 주거시설로 활용

## ⑧ 제도적 지원

- 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1974년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 1994년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공여구역 반환에 수반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및 2002년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 등 제정 운용

-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위시설청이 미군 및 자위대의 활동으로 인한 장애요인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지원하고, 미군기지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임차 관리 및 지역주민과 지자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상대책을 전담
- 오키나와현청에는 1972년부터 미군기지대책과를 조직하고 시정촌 등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미군 기지 규모에 따라 과 또는 팀 단위의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 담당
- 2002년 오키나와진흥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반환공여구역대책과가 조직되어 실무 담당

Ⅰ <표 11> 오키나와 미군공여구역 관련법 Ⅰ

구분	상세 내용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정비 등에 관한 법률 (1974)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64 883 849 970">목적</td> <td data-bbox="849 883 1235 970">-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td> </tr> <tr> <td data-bbox="564 970 849 1250">주요 내용</td> <td data-bbox="849 970 1235 1250">                     -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장애방지공사 조성,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민생안정시설의 조성, 특정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손실보상 등의 기준 마련                      - 방위시설청은 주일 미군의 훈련장, 비행장, 항만 등으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임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대책을 전담                      - 법 제7조에 의거 매입한 토지를 지방공공단체에 무상 대여 등이 규정                 </td> </tr> </table>	목적	-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장애방지공사 조성,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민생안정시설의 조성, 특정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손실보상 등의 기준 마련 - 방위시설청은 주일 미군의 훈련장, 비행장, 항만 등으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임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대책을 전담 - 법 제7조에 의거 매입한 토지를 지방공공단체에 무상 대여 등이 규정
목적	- 미군 주둔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				
주요 내용	- 방위시설청의 주관으로 장애방지공사 조성, 비행장 주변의 생활환경 정비, 민생안정시설의 조성, 특정방위시설 주변 정비 교부금, 손실보상 등의 기준 마련 - 방위시설청은 주일 미군의 훈련장, 비행장, 항만 등으로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매입과 임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대책을 전담 - 법 제7조에 의거 매입한 토지를 지방공공단체에 무상 대여 등이 규정				
오키나와현에 있어서 주류군 용지의 반환에 수반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1994)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64 1250 849 1372">목적</td> <td data-bbox="849 1250 1235 1372">- 주일미군기지 용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반환용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오키나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td> </tr> <tr> <td data-bbox="564 1372 849 1760">주요 내용</td> <td data-bbox="849 1372 1235 1760">                     - 법의 정의 및 국가와 오키나와현 및 관계 시정촌의 협력                      - 반환용지의 원소유자와의 협력                      - 반환실시계획                      -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조치                      - 조사 및 측량                      - 시정촌 및 현 종합정비계획                      - 종합정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려                      - 반환용지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 국유재산의 활용                 </td> </tr> </table>	목적	- 주일미군기지 용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반환용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오키나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주요 내용	- 법의 정의 및 국가와 오키나와현 및 관계 시정촌의 협력 - 반환용지의 원소유자와의 협력 - 반환실시계획 -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조치 - 조사 및 측량 - 시정촌 및 현 종합정비계획 - 종합정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려 - 반환용지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 국유재산의 활용
목적	- 주일미군기지 용지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오키나와현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반환용지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고, 오키나와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				
주요 내용	- 법의 정의 및 국가와 오키나와현 및 관계 시정촌의 협력 - 반환용지의 원소유자와의 협력 - 반환실시계획 -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조치 - 조사 및 측량 - 시정촌 및 현 종합정비계획 - 종합정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려 - 반환용지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 - 국유재산의 활용				

구분		상세 내용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 (2002)	목적	- 오키나와의 특수한 사정을 비추어 오키나와의 진흥을 기본으로 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오키나와의 종합발전계획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오키나와의 자립적 발전 및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 내용	- 반환용지 이용의 촉진 및 원활화를 위한 특별조치 - 반환용지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정의 - 대규모 용지의 지정 - 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특정 용지의 지정 - 시정촌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급부금 지급

자료: 행정안전부(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내실화 계획) 및 한국국방연구원(200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 연구

## ② 독일

### ④ 미군기지 및 반환공여지역 연혁

-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주둔하던 미군은 이후 1989년 독일 통일, 1994년 동독지역의 구소련군 완전 철수 등으로 인해 주둔 필요성이 감소하여 철수 시작
  - 1990년대부터 독일 내 공여지 반환이 이슈화되기 시작
- 주독미군을 포함하여 독일 내 주둔하고 있던 외국군의 공여지는 연방부동산관리청의 소유로서, 외국군이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었음
  - 군대 철수 및 군부지 사용중단이 발표되면, 규정에 따라 군공여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연방부동산관리청과 맺은 임차계약이 종료됨으로써 반환이 이루어지며, 반환된 공여지는 소유자인 연방부동산관리청이 관리

### ④ 반환공여구역 활용 현황 : 풀다(Fulda)시

- 유럽 내 다른 도시들과 달리 풀다시 주민들은 일자리 저감 및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미군 철수를 반대

- 미군에 의해 건설된 다운 기지(Downs Barrack)와 시켈스 비행장(Sickels Airfields) 등 큰 규모의 시설이 미군 철수로 기지 반환 및 용도변경이 되면 풀다시 고용 손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 이후 풀다시는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독일 건축법에 근거, 다운 기지를 긴급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주민이 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 이 조치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모든 개발구역의 토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기지의 개발 방향을 설계
- 연방부동산관리청 설립 이전 독일연방의 자산관리를 담당하던 연방자산관리청이 다운 기지의 부지를 민간 및 공공 투자자들에게 분할 매각
- 부지내 연료저장탱크는 석유무역회사가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탱크 차량 정비소는 건설 중장비 보관창고로 전환되었으며, 다운기지의 가족생활 주거시설은 민간투자 그룹에 의해 매입되어 리노베이션 후 주택으로 재활용

## 제도적 지원

- 독일의 반환공여구역은 연방부동산관리청이 소유하며 관리
  - 연방부동산관리청은 2005년 독일 연방재무부 산하에 신설되어 재무부 소유의 모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정부 소유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 및 관리를 담당
  - 2011년을 기준으로 독일연방정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 연방부동산관리청에 양도되었으며, 2013년 독일연방방위처 책임하에 있던 군사부지 또한 양도되어 매각 및 임대사업 시행
- 한편,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반환공여지는 부지오염에 대한 정화작업이 필요할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 협정 및 독일 영역 내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한 보충협정에 따라 독일 정부가 정화작업 실시
  - 이에 부담되는 모든 비용은 미군이 부담하며, 만약 미군이 부담한 비용으로도 정화작업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공여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개발수

- 해자가 미군의 오염정화 부담금을 부담
- 이 과정으로도 오염정화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시, 남은 부분의 정화작업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가 맡게 됨

### 3 필리핀

#### 미군기지 및 반환공여지역 연혁

-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 이후 필리핀을 획득한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미군 주둔
- 1947년 군사기지협정 체결로 수빅(Subic)만은 미국 해군기지로 클락(Clark)는 공군기지로 99년간 사용
- 1986년 필리핀 정부가 군사기지협정 연장을 거부하고, 1991년 필리핀 의회에서 미군 군사기지협정 연장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기지사용 협정 만료로 미군기지 폐쇄가 결정
- 미군이 1992년 미군 철수를 완료 짓기 직전인 1992년 3월 '기지전환 개발법'을 제정하여, 필리핀 정부 주도로 개발 추진

#### 반환공여구역 활용 현황 : 수빅만과 클락

- 1992년 기지전환 개발법에 의거, 수빅만은 특별경제자유무역항(Subic Bay Freeport)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빅만 관리청을 신설하여 수빅만 특별경제자유무역항의 독자적 행정권한 부여
- 수빅만 관리청은 민간회사와 협력하여 수빅만의 개발을 주도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14일간 비자 면제, 수빅-클락에 대한 특별 비자발급 등의 다양한 혜택 제공
- 저중밀도 개발 및 친환경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 수빅 게이트웨이, 바탄 테크노파크, 일라닌 리조트 단지, 수빅만 공단, 수빅 테크노파크, 주택임대단지 등 6개 지역 개발
- 약 1,600개의 국내외 투자자들이 100억 달러 투자 및 101,651개의 일자리 창출
- 클락 공군기지 또한 기지전환 개발법에 의거, 1992년 4월 클락 경제특구(Clark Special

Economic Zone)로 지정하고 인허가·규제 해제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

- 같은 해 4월 클락 경제특구의 전담개발기관인 클락개발공사를 설립
  - 클락 경제특구의 토지 소유주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 군사기지의 전환 및 개발을 담당하는 기지전환개발청이며, 클락개발공사는 기지전환개발청의 산하조직으로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항시설의 관리와 개발 육성을 책임짐
  - 운영 초기에는 기지전환개발청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후 사업추진을 주도함으로써 독자적 자금 운용이 가능해짐
- 클락경제특구의 토지는 투자를 원하는 민간에게 매각이 아닌 임대로서 제공
  - 지방정부가 클락개발공사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도로 및 교육시설과 같은 인프라 시설과 태풍 및 홍수와 같은 방재시설에 지원
- 클락지역은 3개 공단을 포함한 제조시설, 농업단지, 레크리에이션 시설, 국제공항 및 관련 시설 등이 입지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태 및 레저도시가 결합된 복합도시로 개발

## 제도적 지원

- 1992년 기지전환 개발법에 제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발을 주도하고 지원
  - 이는 필리핀 정부가 1991년 클락 공군기지에서의 미군 철수 후 필리핀 공군이 클락기 지시설을 훼손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행정부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함임
-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로서 군사기지의 전환 및 개발을 담당하는 기지전환개발청을 설립하여 미군반환 공여지를 관리하며, 구체적인 개발사업은 특별경제자유무역항 및 경제특구 지정 등으로 지역별로 특화 조직을 설립하여 지원

## IV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 1 기본방향

#### ⑧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활용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한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도 독일, 필리핀 등과 같이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반환공여구역 소유자인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토지매각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부담 상존
- 반환공여지의 토지매입비 부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투자자들의 공공·민간투자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함
  - 현행 특별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14조), 토지 용도는 도로·공원·하천에 한정되어 있음
- 2017년 재수립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은 피해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복지사업 등 주변지역 주민지원시설에 투자를 제고하기로 방향 설정
  -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 필요

#### ⑧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반환공여지 개발에 국비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현재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캠프의 규모가 방대하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반환 협상을 하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협상하기 어려운 미군 및 국방부와의 협력과 공조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이 구축되어 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담당 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기능 분산되어 종합적인 관리 및 추동력 확보 미흡

## ② 전담기구에 의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방안

### ⑧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 현재 반환공여지 관련 중앙정부 조직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에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조직들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활용과 그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
  - 국무조정실은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내 4개 팀(정책총괄팀, 지역협력팀, 동두천 TF팀, 대외협력팀)이 구성되어 미군기지 반환 협상 및 제도개선, 환경정화 지원,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운영 지원, 미군기지이전 재원확보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행정안전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내 1개 팀(특수지역발전팀)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반환공여구역 활용을 지원
  - 국방부는 2006년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7개팀(기획총괄팀, 협상기획팀, 예산회계팀, 환경국유재산관리팀, 사업관리총괄팀, C4사업관리팀, 건설사업관리팀)으로 구성되어 미군기지 반환 협상, 이전사업 마스터플랜 작성, 사업 관련 업체 선정 및 재원확보, 반환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관리·처분 협약 체결 및 개발 등의 업무 수행
-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국방부 모두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담당 부서의 규모가 작거나 주요 업무들이 평택기지 및 용산기지 이전사업에 치중
  - 현재의 반환공여지 개발 담당 조직은 반환공여지 개발보다는 사업의 지원 및 관리·협상 또는 반환기지 매각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은 미군과의 반환 협상,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정화 등 국가 사무에 해당되는 사무의 종결이 전제된 만큼, 공여지 개발이 추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국비 사업 추진, 관련 공사의 사업 추진의 방식도 있겠으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⑧ 유사기구 설립사례

- 해외의 경우, 앞 장에서 살펴본 필리핀의 기지전환개발청이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국가 주도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사례로 2013년 설립된 새만금개발청과 2018년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가 있음
- 새만금 개발사업은 1991년 대규모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08년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경제중심지로 개발 방향이 변경되어 산업·관광·에너지 등 복합용도로 개발 착수
  - 토지 용도별로 6개 부처가 분산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나, 부처별 개발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2년 새만금개발청 설치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새만금 매립지의 소유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지고 사업시행자의 역할은 농어촌공사가 맡고 있으나, 개발 인허가권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님
  - 산업단지·농생명용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실시하고,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는 민자 유치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매립비용 등의 이유로 민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전담개발공사를 설립
- 새만금개발청 산하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는 매립실적이 부진한 관광레저·국제협력 용지 중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공공주도로 선도적으로 매립·조성 예정
  - 선도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선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는 이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부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등과 함께 새만금사업에 재투자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4조 새만금개발청의 설치 등

- 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새만금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③ 새만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36조의2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6조의3 법인격 및 사무소

-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②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③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⑧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안

### 1 1안 : 정부행정기관으로서 개발청을 설립하는 안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전담하는 가칭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설립하고 산하에 가칭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를 둠
- 분산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반환공여지 관련 업무의 통합추진을 담당하되, 정부행정 기관의 경우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설립되는 개발청 산하에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전담개발공사가 전국의 미군 반환공여구역 반환교섭의 매각·개발·관리 업무를 수행
-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관련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 또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각각 2013년 및 2018년에 설립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외의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새만금법에서와같이 작용법에서 소속부처, 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급(정무직 또는 별정직)을 규정하고 세부업무도 규정해야 함

### 2 2안 : 정부소속기관으로서 사업단을 설립하는 안

-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정부소속기관으로서 가칭 반환공여 구역사업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음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사례와 같이 중앙행정 기관장 산하 사업단을 설치하는 방안임
- 개발청에 비해 반환업무 관련 통합추진 및 협상력은 다소 낮을 수 있으나, 개발청에 비해 설립이 용이한 측면은 있음

- 단, 현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의 업무 중복 등이 없도록 업무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단의 경우에도 영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설립되는 사업단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반환공여지 및 주변 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8조의2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의 설치

- ① 주한미군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과 군인을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그 밖에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안 :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안

- 관련 부처 협의 및 업무조정 난항으로 정부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개발공사만을 설립하여 국가주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재원조달 방안

- 현재 특별법의 재원 조달 규정은 제34조 사업비 지원과 조성에서 제2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
  - 시행령 제32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규정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시도지사가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 중 특별

교부세를 그 운영 재원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특별교부세에 불과하여 자원 규모 및 사업비 조성 성과가 미미

-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또한 특별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 특별회계의 설치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8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새만금사업지역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금. 다만,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제외한다.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 ①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국방부 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 ④ 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편익시설의 설치를 위한 자금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6.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운용과 그에 필요한 자금
  7.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8.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사·복구 및 방지대책에 필요한 자금
  9.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3 관련법 개정

#### ⑧ 국가의 책무 규정 신설

- 반환공여지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
-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타 법률 조문과 비교할 때(평택지원법 등), 국가의 책무 조항을 선언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제4조~제6조가 2009년 개정 당시 삭제된 상태이므로,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신설 조항은 제4조~제6조에 배치될 수 있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제4조 국가의 책무

- 국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장기간 개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거나 지역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⑧ 가칭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설립 규정 신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전담하는 가칭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의 설립 규정 신설
- 현행 특별법에서 개발청을 설립하고자 할 때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행 법률 체계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주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반사무)하고 있어서, 현 체계상에서는 개발청에 새만금개발청과 같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것임
  - 권한 조정 없이 현 법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청을 설치할 경우, 필요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 개별조항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중 일부라도 개발청에 이전하든지, 아니면 개발청의 구체적인 업무를 개별조항에서 규정해야 함

- 향후 개발청의 설립목적 및 업무 규정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적 성격의 업무를 규정해야 함
  - 부대적인 업무만 명시하여 특별법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제00조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의 설치 등

- ①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개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 ③ 개발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협의 및 확정(제7조 규정 변경 전제)
  2. 제9조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의 협의 및 확정(제9조 규정 변경 전제)
  3. 제00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특별회계 조항 신설 전제)
  4. 개발사업의 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5. 개발사업이 사업지역 내 토지 및 시설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6.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7.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개발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개발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칭 반환공여구역개발사업단 설립 규정 신설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을 담당하는 가칭 반환공여구역 사업단의 설립 규정 신설
- 사업단은 반환공여지 관련 업무의 통합추진을 담당하되,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영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설립되는 사업단 산하에 전담개발공사를 설립하여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제00조 반환공여구역개발사업단의 설치 등

- ①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과 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반환공여구역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업단에는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단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제00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3. 개발사업이 사업지역 내 토지 및 시설 등을 이용한 수익사업
  4. 개발사업의 총괄·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사업단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칭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 설립 규정 신설

- 가칭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는 이상의 개발청 및 사업단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단독으로 설치 가능
- 공사의 경우 법인 설립의 일반모델을 따라, 법률에 규정해야 할 최소항의 조항은 ① 개괄적인 설립목적, ② 법인이라는 점, ③ 목적사업, ④ 법인의 성격과 관련하여 법률이 직접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상법을 준용한다는 점, ⑤ 그 밖에 주무관청을 정하고 법률에서 설립을 강제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두어야 함
- 공사의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 등은 향후 보다 상세한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 설립의 일반모델에 따른 특별법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제00조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의 설립

- ① 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생략)
- ④ 공사는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제00조에 따른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수익사업의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 ⑤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⑥ 그 밖에 공사의 조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 주도의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추진 의지 표명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 등은 공사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마련하는 것도 가능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부칙

#### 제0조(설립위원회)

-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반환공여구역개발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설립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된다.
-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치면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 특별회계 설치 규정 신설

- 특별회계의 설치도 입법모델에 따라 설치목적, 세입, 세출 등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 시켜 규정하여야 함
- 아울러 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별표 1을 함께 개정해야 함(부칙 개정 사항)



### 국가재정법

#### 제4조 회계구분

-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서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세입 및 세출 규정 등은 향후 재원조달의 엄밀한 분석에 따라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특별회계 설치의 입법모델에 따라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세입 및 세출 항목은 정책적으로 검토하되, 특별한 세입을 찾기 어려우면 일반회계 전 입금이 주를 이루도록 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 제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00조 회계의 세입과 세출

#####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6. 회계 자금의 용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기반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3.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4.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③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참고문헌

- 경기연구원(2018),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행정안전부(2017),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내실화 계획)  
경기연구원(2016),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발전방안  
파주시(2016), 미군 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집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국방연구원(2001),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대책 연구